

「용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」 계속비사업 승인 안 심사보고

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4.12.7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4. 12. 2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12. 2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68호)
- 다. 2004. 12. 7 :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(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)

가. 제안사유

- 가. 하수 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(2004~2007)를 요하는 사업으로
- 나.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함.

나. 계속비사업 승인 안

○. 목 적

본 사업은 수질오염방지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용현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함으로서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○ 관련법규

- 지방재정법 제33조(계속비)
-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(계속비사업의 예산요구)

○ 사업개요

- 위 치 : 용현면 금문리 일원
- 사업기간 : 2004. ~ 2007.
- 시행주체 : 사천시
- 총사업비 : 15,686백만원
- 시행방법 : 장기계속공사
- 사업량 : 시설용량 $Q=1,500\text{m}^3/\text{일}$, 차집관로 $L=14\text{km}$

○ 추진현황

- 사업계획서제출(환경부) : 2003. 6.
- 사업비 확정 (환경부) : 2004. 1.
-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(경남도) : 2004. 5. 기타공사로 결정.
-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발주 : 2004. 12.
- 공사 착공 : 2005. 10.
- 공사 준공 : 2007. 12.

○ 사업비 : 15,686백만원(국비 10,514. 도비 2,819. 시비 2,353)

-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	비고
계	15,686	646	3,004	6,500	5,536	
국비	10,514	-	2,103	4,550	3,861	
도비	2,819	556	451	975	837	
시비	2,353	90	450	975	838	

○ 사업별 투자내역(단위 백만원)

구 분	사업비	비 고
합 계	15,686	
공 사 비	13,786	토목·조경, 건축, 기계, 전기·계장공사
보 상 비	500	
설계용역 및 부대비	1,400	

○ 계속사업 이유

- 하수 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(2004~2007)를 요하는 사업으로
- 당해년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면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정운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자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영태)

-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장기간(4년)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(계속비)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년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본 사업은 수질오염방지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용현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함으로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

-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일원에 156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를 거쳐 2005년 10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1,500m³ 규모의 처리시설과 14km의 차집 관로를 설치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
 -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10월21일 경상남도 지사의 투·융자사업심사결과 승인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년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
 - 2005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전원찬성)

7. 소수의견 : 없음

8 기타 참고사항 : 계속비 사업조서(붙임참조)